

December 16, 2020

Legal Update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뉴스레터 VOL.4

Contents

Legal Update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	2
베트남 기업법 개정	6
베트남 증권법의 개정	9

Case Study

역외대출을 통한 리파이낸싱 제한.....	14
------------------------	----

Legal Article

베트남, 태양광 산업 해외 투자 관련 규제의 향방.....	16
Eligibility Construction Certificate	21

[Legal Update]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¹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

>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에 관한 안건이 2020년 6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규제 관련 개정

> Negative List Approach:

- 개정 투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열거한 규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향후 정부 시행령으로 규제 분야 및 각 분야별 상세 요건(i.e.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제한, 투자 형태, 사업 형태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

> 외국인 투자자의 새로운 정의:

현행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개정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을 소유한 회사("A")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0% 를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B")
A사가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을 소유한 회사	B 사가 정관자본금의 50% 를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
A사 및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을 소유한 회사	B 사 및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0% 를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

1.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mergers-acquisitions_5/vietnam-new-investment-law-and-draft-guiding-decree

M&A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현행 투자법에 따른 M&A 사전 승인	개정 투자법에 따른 M&A 사전 승인
대상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로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의 출자 또는 지분 인수	규제 분야 사업을 영위하거나 국경/해안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내에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대상회사 내 외국인 투자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출자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대상회사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50% 이하였으나 50% 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및 이미 50% 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 조건부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u>지분율 변동 이후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대상회사 정관자본금의 51% 미만인 경우 외국인 지분 등록 불필요</u>	→ 규제 분야 산업을 영위하거나 국가 안보 관련 지역 내의 회사가 아니라면, <u>지분율 변동 이후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대상회사 총 지분의 50% 이하인 경우 M&A 사전 승인 불필요.</u>

현행 투자법상 조건부 규제 산업의 변동

> 추심 서비스 금지

- 개정 투자법 제6조 제1항 제(h)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추심 서비스(debt collection service)는 금지 산업으로 변동됨. 개정 투자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시행일(2021. 1.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개정 투자법의 시행일자로 해제하여야 함

> 프랜차이즈 및 물류 산업의 허용

- 아래의 사업은 현행 투자법에 따르면 조건부 산업이나, 개정 투자법에 따라 규제 분야에서 제외됨:
 - 프랜차이즈(franchising)
 - 물류(logistics)

> 데이터 관련 사업의 조건부 허용

- 전자 신원 확인 및 권한 부여(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ervices)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 필요:

-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을 것
 - 관리자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할 것
 - 기타 기술적인 요건을 갖출 것
- 지급 중개 서비스 및 고객의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는 지급 서비스(payment service not through customer's bank account) 산업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 필요:
 - 500억동 이상의 최소 자본금을 갖출 것
 - 법적 대표자가 전문성 및 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을 보유할 것
 - 기타 기술적인 요건을 갖출 것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예치금

> 투자 이행 예치금

- 개정 투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 임차 받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정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거나 은행의 이행보증을 제공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를 예외로 함:
 -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가 정부로부터 할당 또는 임차료를 일시납(one-off rental payment)하는 형태로 임차된 경우
 -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 투자등록증명서 또는 원칙적 투자승인서에 승인된 일정에 따라 자본금 출자 또는 차입을 완료하였거나 예치금을 납부한 투자 프로젝트를 양수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임차 받은 경우
 - 투자자가 토지사용권이나 토지에 부착된 자산(i.e. 건물)을 양수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임차 받은 경우

개정 투자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 개정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지 기업으로 의제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기준 지분율이 51%에서 50%로 축소 → 향후 베트남 로컬 파트너의 협조나 의결권 위임 없이 단독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어렵게 됨

> 소급효 가능성이 있는지?

- 개정 투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수 있으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으나, 지분 취득 제한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고려하면 단순히 특정 기간 동안 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기타 시사점

- 아직 개정 투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하위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입법 향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함
-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는 사업시행법인의 경영권 장악 및 베트남 로컬 파트너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주식회사 우선주 발행, 사업시행법인 주주회사 구조화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Legal Update] 베트남 기업법 개정²

베트남 기업법 개정

- 베트남 기업법의 개정에 관한 안건이 2020년 6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 기업법의 경우 근본적인 변동은 없으나 기업의 등록, 운영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음

개정 기업법의 주요 내용

> 전자 인감의 허용:

- 현행 기업법 제44조는 법인 인감 등록에 따른 물리적 법인 인감만을 인정
- 개정 기업법 제43조는 전자거래법(law on electronic transactions) 제21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 인감 역시 같은 효력을 가진 법인 인감으로 허용함

> 현물출자에 관한 자본금 납입 기간의 명확화:

- 현행 기업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개정 기업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서도 동일하나,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의 운송/수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9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기업 등록에 관한 온라인 절차 허용:

- 현행 기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 등록 관련 서류는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mergers-acquisitions_5/vietnam-new-investment-law-and-draft-guiding-decree

- 개정 기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서도 동일하나, 온라인으로 국가 기업 등록 포털(National Portal of Business Registration)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것 현행 기업법상의 제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주주총회의 개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변경:

	현행 기업법	개정 기업법
개회정족수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51% 이상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50% 이상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51% 이상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50% 이상
의결정족수 (특별결의)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65% 이상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65% 이상

> 주식회사의 기업 운영 관련 변화:

	현행 기업법	개정 기업법
이사회/감사위원회 후보 지명	단독/공동으로 보통주의10% 이상*을 <u>최소 6개월간</u> 보유해 온 주주	단독/공동으로 보통주의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회사 문서에 대한 접근권한	단독/공동으로 보통주의10% 이상*을 <u>최소 6개월간</u> 보유해 온 주주	단독/공동으로 보통주의5% 이상*을 보유한 주주
특정 사안에 관하여 주주 총회 개회를 요청할 권한		
특정 사안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할 권한		
감사위원회의 장의 자격 요건	감사인 또는 회계사 전문 자격을 보유한 자	감사인 또는 회계사 전문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u>금융, 경영, 회계, 감사, 법 등 대학 학위를 보유한 자</u>

* 정관으로 기준 지분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 사모발행:

-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 사모 발행의 정의: 대중매체(mass media)를 통하지 않고 10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발행된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를 말함(개정 기업법 제128조)
- 사채 인수자별 인수 가능 채권 종류:
 -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s): 전환사채 및 담보부사채 인수 가능
 - 전문증권투자자(professional securities investors): 전환사채, 담보부사채 및 기타 다른 종류의 사채 인수 가능
- 비상장주식회사가 사채를 사모 발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채사모발행이 금융기관(selected financial institutions)인 채권자를 위하여 발행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만기가 도달한 기존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거나 당해 사채 사모발행 이전 3년간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을 것(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격을 갖춘 감사인이 사채 사모발행 이전의 직전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을 것
 - 사업 운영을 위한 재정적 안정성 및 건전성 비율을 충족하였을 것
 - 법에 따른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을 것

[Legal Update] 베트남 증권법의 개정

베트남 증권법의 개정

> 베트남 증권법의 개정에 관한 안건이 2019년 11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상장회사 주식 인수 시의 공개매수(Tender Offer)

> 공개매수의 대상 확장:

- (현행)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개정)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변경
- (현행)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의결권 있는 유통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개정)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직·간접적인 보유 지분이 의결권 있는 유통 주식 총수의 35%, 45%, 55%, 65%, 75%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
※즉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추가 취득분이 10% 미만인 경우 공개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정법에 따르면 인수 후 지분율이 일정 수준(35%, 45%, 55%, 65%, 75%)에 도달하는 한 추가 취득의 시점과 규모를 불문하고 공개매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현행)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대상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이전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5% 이상 10% 미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개정) 삭제

> 공개매수의 예외와 관련한 변경:

- (현행)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로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개정) 25% 이상이 아니라 공개매수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
- (현행) 상장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양수하는

경우 → (개정) 25% 이상이 아니라 **공개매수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

- (현행)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의 주식양수도의 경우 → (개정) 모자회사, 계열사 등 **그룹사 내 회사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경. 단 기업법에 따른 상호출자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현행) 법원의 판결에 따른 주식 이전의 경우 → (개정)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 및 중재기관의 판정**에 따른 주식 이전의 경우도 포함
- 그 외 개정 증권법에서 추가된 사항: 정부 자산(state capital)의 이전 등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주식회사의 상장 요건 강화

- > **최저 자본금 요건 상향:** IPO 신청일 기준 상장희망회사의 최저 정관 자본금이 300억 VND 이상일 것 (현행법상 100억 VND 이상)
- > **흑자 유지 의무 강화:** IPO 신청일 이전 2년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신청 연도까지 누적 손실이 없을 것 (현행법상의 기준 기간은 1년임)
- > **기타 추가된 주요 요건:** ① 상장희망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이상이 10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대주주가 아니어야 함)에게 매각될 것(단 자본금이 1조 VND 이상인 경우 매각 기준은 15%에서 10%로 하향), ② 대주주가 IPO 후 1년간 상장희망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겠다는 내용을 확약할 것, ③ IPO 신청 서류 및 등록에 관하여 별도의 증권사가 자문할 것(상장희망회사가 증권사인 경우는 예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설립 요건 강화

- > 현행 증권법에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설립 요건을 ① 최저 자본금 보유, ② 사무실 및 시설 보유, ③ 총 책임자 및 주식 거래 책임자의 자격증 보유 등으로 정함(현행 증권법 제62조 제1항).
- > 개정 증권법에서는 본사의 직전 2개년 흑자, 사장 및 부사장의 전문성* 등의 요건이 추가됨(개정 증권법 제74조 및 제75조)

* 예컨대 증권사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자산운용사의 경우 최소 4년 이상 금융(재무, 증권, 은행 또는 보험) 산업 분야의 회사에 재직하였거나 회사의 재무, 회계 또는 투자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재무 분석 또는 자산 관리 등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할 것

- > 외국인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설립의 경우, 현행 증권법상의 요건(i.e. 감독당국의 승인) 외에 설립자의 자격 요건*과 설립자의 국적국이 베트남과 상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개정 증권법 제76조 및 제77조)

* 설립자가 최근 2년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을 영위한 자일 것

** 설립자가 속한 국가의 감독당국이 증권위원회와 자료 교환, 규제준수 협조 등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설립을 불허함

증권시장 교란행위의 구체화 및 규정 위반 시의 처벌 강화

> 현행 증권법 제9조에 따른 증권시장 교란행위의 구체화 및 위법 행위 추가:

- 증권 공모, 상장, 거래, 증권 관련 사업, 투자 및 서비스 제공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직·간접적 사기, 부정행위, 정보 조작 등의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증권 매매를 위하여 내부 정보를 누설, 제공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타인의 증권 매매를 자문하는 행위
- 차명 계좌를 사용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증권 매매에 대한 허위 수요/공급을 조성하는 행위 및 이에 허위 정보/소문을 더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개정 증권법 제12조 제3항으로 추가됨)
- 증권위원회로부터 인허가/승인을 취득하지 않고 증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개정 증권법에 따른 증권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및 규정 위반 시의 제재 강화:

-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증권위원회는 증권사/은행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통신사에 대하여는 혐의자의 연락처, 통화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음(개정 증권법 제130조)
- 기관에 대하여 최대 **30억 VND**, 개인에 대하여 최대 **15억 VND**의 과태료 부과 (개정 증권법 제132조 제4항, 제5항)
→ 최대 20억 VND (기관), 최대 10억 VND (개인)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현행 증권법상의 제재를 강화함

외국인의 상장사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논의

> 현행 법령에 따른 투자제한

- 현행 증권법은 외국인의 상장사에 대한 투자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하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상장사 주식의 100%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이사회 및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보유 지분 제한이 있음(예를 들어

조건부 사업*의 경우 보유지분 총액을 49%로 제한) (Decree 60/2015/ND-CP 제1조 제2항)

*조건부 사업이란 베트남의 국가 안보와 안전, 사회질서 등을 이유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으로 총 227개에 달함(개정 투자법 제7조 제1항 및 부록 IV)

> 증권법 및 기업법 개정 과정에서의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관련 논의

- 증권법 본문에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가결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무의결권 주식(non-voting shares) 또는 무의결권 예탁증서(non-voting depositary receipt)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음.³ 이를 반영하여 개정 기업법상 의결권 없는 예탁증서가 도입되었는데(동법 제114조 제6항), 개정 증권법 본문에는 특별히 반영된 내용이 없음
- 따라서 향후 증권법 하위 규정의 입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증권시장 개방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상당함
- 예컨대 조건부 사업의 경우 제한되는 범위(i.e. 49%)를 초과하는 지분율에 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무의결권 예탁증서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제한을 완화하거나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개정 증권법 관련 시사점

- > 개정 증권법을 살펴보면, IPO 및 공개매수 요건이 다소 강화된 것으로 보임.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설립 요건도 강화되어, 외국계 금융회사의 베트남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기진출한 회사의 경우 증권위원회의 조사·감독 권한이 강화되면서 자료 제출 부담 등이 증가할 수 있음
- > 2019년 6월 MSCI*의 글로벌 증시접근성 리뷰는, 베트남과 관련해 평가 항목 중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 ‘주식시장 인프라’ 등의 항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분석함⁴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미국 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지수 정보제공 회사로, 글로벌 주식시장을 선진국, 신흥국, 프런티어 등으로 구분해 지수를 산출함

- > 이에 따라 2018년 10월 공개된 개정 증권법 초안은 외국인 투자 제한의 폐지, 호치민/하노이 증권거래소 (HOSE/HNX)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였으나, 가결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3.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4>

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014490519286>

- > 베트남 당국이 위 개선점을 극복하는 경우, 주식시장이 MSCI 신흥시장(Emerging Market)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 리스크 완화에 따라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자본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 맞추어 하위 법령이 개정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Case Study] 역외대출을 통한 리파이낸싱 제한

역외대출이 가능한 경우(Circular No. 12/2014/TT-NHNN)

> 차주 또는 차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의 사업/생산 계획 또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업 및 생산 계획 또는 투자 프로젝트”는 베트남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대상 회사의 설립증서, 기업등록증서, 투자증서 등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 차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의 사업 및 생산 계획 또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는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역외대출만 가능함

> 차주의 역외대출을 리파이낸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 다만 역외대출을 리파이낸싱(상환)하는 경우 대출비용이 증가하지 않아야 함
- “대출 비용”이란 이자, 기타 대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 보증인, 대출 에이전트, 기타 관련 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반 비용을 합산하여, 대출금에 대하여 연간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즉 규정상 역외대출을 통하여 융통한 자금은 (i)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ii) 기존의 역외대출금을 대출 비용의 증가 없이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음. 해당 자금으로 기존의 역내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목적에 위반한 역외대출의 제재

> 과태료 부과(Decree No. 88/2019/ND-CP)

- 차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300,000,000 VND에서 400,000,000 VND, 개인인 경우에는 150,000,000 VND에서 200,000,000 VND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위 과태료 부과 사실이 대출계약의 효력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리파이낸싱 실무 사례

- > 베트남에서는 역외대출 조달 비용과 비교하여 역내대출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음 → 역외대출로 역내대출을 리파이낸싱하려는 수요가 높음.
- > 차주 또는 차주가 직접 투자한 사업 및 생산 계획 또는 투자 프로젝트 목적(이하 “**허용된 목적**”)의 역외대출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역외대출의 경우 과태료가 높지 않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실무상 아래와 같은 리파이낸싱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실무상 활용되는 리파이낸싱 구조

• 차주가 허용된 목적으로 역외대출을 받아 기존의 역내대출을 상환하는 사례

- 허용된 목적으로 역외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대출계약의 효력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각 경우의 손익을 계산하여 리파이낸싱에 따른 이익이 과태료 예정액보다 크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허용된 목적으로 역외대출을 받아 기존 역내대출을 상환하는 사례가 있음
- 역외대출을 위한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장점이나 사실상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제가 있음

• 차주가 설립한 SPC를 통해 조달한 역외대출금을 차주에게 대여하여 차주의 기존 역내대출을 상환하는 사례

- 베트남 법인(이하 “A”)의 소유주가 지분을 현물출자하여 베트남에 특수목적법인(이하 “B”)을 설립 → B사가 자회사인 A사를 위하여 허용된 목적으로 역외대출을 받음 → B사가 A사에 해당 대출금을 대여함
- 다만 B사는, A사가 허용된 목적으로 차입하는 총 금액 중 B사의 A사에 대한 지분율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역외대출을 할 수 있음
- B사의 A사에 대한 대여는 베트남 역내 대여이므로, 중·장기 역외대출과 달리 베트남 중앙은행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임

• 회사채 발행 대금으로 기존 역내대출을 상환하는 사례

- Decree No. 163/2018/ND-CP 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의 목적은 (i)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 (ii) 운영자금의 증액, (iii) 채무 구조조정(refinancing)임
- 따라서 차주가 베트남 내에서의 회사채 발행 요건을 충족한다면 베트남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기존 역내대출을 상환할 수 있음

[Legal Article] 베트남, 태양광 산업 해외 투자 관련 규제의 향방

태양광 산업 관련 베트남의 장점⁵

- > **태양광 산업에 있어 최적의 자연 환경 보유:** 한 해 일광 시간이 1400~3000시간에 달하고, 태양광 복사량(solar radiation)도 230~250kcal/cm²에 이르는 등 태양에너지 발전에 있어 최적의 자연 환경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 **증가하는 전력 수요:** 최근 주목받는 신흥국으로서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전력 수요 역시 매년 8% 씩 증가하고 있음
- >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추진 의지:**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초 ‘제7차 베트남 전력계획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1%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태양광 우선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여러 정책을 발표함

2016년 ~ 2017년 태양광 투자 관련 정책

- > **2016년 3월 18일자 제7차 베트남전력개발계획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대비 21%로 확대 (기존 제7차 개발계획 원안 기재 9.4%에서 대폭 상승)
- > **2017년 4월 11일자 총리 결정(Decision 11/2017/QD-TTg)에 따른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 FIT):**
 - 베트남 전력공사의 태양광 에너지 전력 구매단가(“전력구매단가”)에 적용되는 환율을 2017년 4월 10일자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환율(VND 22,316 = USD 1)로 고정
 - 전력구매단가를 2,086 VND/kWh(US\$ 9.35)으로 고정
 - 위 전력구매단가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유효

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63277>

태양광 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

> 2020년 4월 6일 태양광 발전 촉진에 관한 총리 결정(Decision 13/2020/QĐ-TTg, 이하 “Decision 13”)에 따른 개정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

- 발전 유형에 따른 적용 환율(고정):
 - 수상형, 지상형,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VND 23,175 = USD 1
 - 닌투언(Ninh Thuan) 성 특례 적용시: VND 22,316 = USD 1
- 전력구매단가는 발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되고, 운전 개시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함
 - **수상형 태양광 프로젝트(floating solar power project)**: VND 1,783/kWh (US¢ 7.69)
 - **지상형 태양광 프로젝트(ground solar power project)**: VND 1,644/kWh (US¢ 7.09)
→ 수상형, 지상형 프로젝트의 경우, 2019. 11. 23.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승인을 취득하고 2019. 7. 1 부터 2020. 12. 31. 이전까지 운전을 개시한 프로젝트에 적용됨
 -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rooftop solar power project)**: VND 1,943/kWh (US¢ 8.38)
→ 2019. 7. 1 부터 2020. 12. 31. 이전까지 운전을 개시한 프로젝트에 적용됨
 - **닌투언(Ninh Thuan) 성에서 진행되고 2020. 1. 1전까지 운전을 개시한 전력망 연결형 태양광 프로젝트(grid-connected solar power project)**: 태양광 발전 사업 육성 정책이 적용되어 VND 2,086/kWh (US¢ 9.35)
→ 다만 닌투언 성의 총 설비 용량(total installed capacity)이 2,000MW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태양광 프로젝트가 기존 국가/성급 전력 발전 계획에 포함된 것이어야 함

> 그 외 주요 사항:

- 국가전력망에 연결되는 각 유형별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력구매계약은 반드시 베트남 전력공사 또는 그 계열사와 표준 전력구매계약 양식으로 체결해야 함
- 기존 정책은 전력 구매자를 베트남 전력공사로 한정하였으나 Decision 13에 따르면 “국가전력망에 연결되지 않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전력 구매자를 베트남 전력공사로 한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임

표준 전력구매계약(Model Power Purchasing Agreement)

-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17년 9월 12일 Circular No. 16/2017/TT-BCT(이하 "**Circular 16**")를 통해 국가전력망과 연결되거나 지붕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표준 전력구매계약서(Model Power Purchase Agreement; PPA)를 발표함
- > Circular 16에 따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개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 또는 성급 태양광 발전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거칠 것
 - 투자자의 자기자본이 총 투자자본금의 20% 이상을 유지할 것
 -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은 1.2헥타르/1MWp로 제한됨
 - 발전량이 1MW 이상인 경우 발전사업 면허(power operating license)를 취득할 것
- > 다만 표준 전력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음:
 - **베트남 전력공사를 유일한 구매자로 규정:** 계약 상대방에 관한 투자자의 선택권이 없음
 - **정부 보증 부재에 따른 대금 지급 리스크:** 베트남 전력공사가 유일한 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한 베트남 정부의 보증 규정이 없음
 - **적용 대상의 한정:** PPA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상업 운영일이 개시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상업 운영 개시 지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채무불이행시 배상액의 부족:** 베트남 전력공사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베트남 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계약 해지 직전 1년 동안의 실제 발전량에 상당한 대금으로만 제한됨 → 20년의 장기 계약에 적용되는 배상액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우려
 - **불가항력 관련 규정의 불비:** 불가항력 규정에 '정부의 조치(governmental act)'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자산 수용과 같은 정부의 조치가 있더라도 투자자가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거나, 반대로 베트남 전력공사가 정부 조치를 이유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국내에 한정된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안:**
 - PPA의 준거법은 베트남 법임
 - 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MOIT 산하 전력 및 재생에너지 기구(Power and Renewable Energy

Agency)를 통해 합의를 지원하도록 하며, 분쟁이 60일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제청으로 MOIT 산하 전기규제국(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에 분쟁해결을 신청하도록 함. 전기규제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최종 결정을 위하여 베트남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해외 투자자로서는 준거법이나 분쟁해결기관을 달리 합의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그 외 국제 표준적인 에너지 구매 계약과 비교하여 누락된 규정들:

- **법률 변경시 보상 조항(Change in Law clause):** 법률 변경시 에너지 구매와 관련한 대안 또는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투자법 등 일반 법률에 법률 변경시 투자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원용할 수 있음
- **개입권 규정(Step-in-right clause):** 채무불이행 등의 비상 상황 발생시 대주단이 프로젝트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의무인수 규정(take-or-pay clause):**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생산자와 구매자 간 연간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인수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있으나, PPA에는 그와 유사한 내용 또는 베트남 전력공사가 수전(受電)에 실패하는 경우에 관한 보상 등의 규정이 없음
- **단가 조정 규정(inflation/exchange rate risk):**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전력 구매단가 조정 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고, 환율 역시 고정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시사점

> 종전 베트남 정부의 태양광 투자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짐:

• 지나치게 낮은 전력구매단가:

- 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하려면 1kWh당 10~11센트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US\$ 9.35/kWh의 가격은 투자 비용 회수 및 수익을 얻기 어려움
- 예상 수익율이 낮아 인해 은행 대출 역시 쉽지 않음

- **정책의 모호함:** 전력구매단가는 2019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고 그 후의 정책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향후의 투자 환경을 예상하기 어려움

• 표준구매계약의 미비함:

- 국제적인 표준에너지구매계약과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많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도 상당 부분 존재

- 규정상 당사자간의 협의로 표준구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요 내용”이 아닌 내용만을 변경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주요 내용”의 상세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음.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실무상 베트남전력공사와 양식의 변경에 관해 협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임.

> 최근 베트남 정부의 태양광 투자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

- 전력구매단가가 기존 정책에서 규정된 것보다 더 낮게 설정되어, 기존 정책보다 수익성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더 불리해진 면이 있음.
- 다만 Decision 13이 전력 구매자를 베트남전력공사 외 제3자로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법리가 하위 규정을 통해 분명해진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력 구매자와 전력구매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면 기존 정책에서 논의된 리스크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
- 우리 기업의 태양광 투자는 저가 정책을 내세운 중국 업체와의 경쟁, 베트남의 전력 인프라 미비 및 정책의 모호함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다만 경제 성장율과 이를 상회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베트남은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베트남 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및 해외 투자 촉진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고 정책 역시 점차 구체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시장 상황과 함께 Decision 13 이후의 하위 법령의 입법과 개정을 앞둔 표준구매계약 (안)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Legal Article] Eligibility Construction Certificate

What is "Eligibility Construction Certificate"?

- > According to Appendix 1 and Appendix 2 of Circular No. 03/2016/TT-BXD and Article 65 of Decree No. 59/2015/ND-CP as amended by Decree No. 100/2018/ND-CP ("**Amended Decree No. 59/2015/ND-CP**"), there are 5 levels of construction works (i.e. special level, level I, level II, level III, and level IV), and the eligibility construction certificate is classified into 3 grades (i.e. grade I, grade II and grade III).
- > The organization engages in construction execution required to obtain the eligibility construction certificate with specific grade corresponding to the level of the works to be constructed ("**ECC**").
 - **Grade I ECC:** For construction execution of construction works of all levels (i.e. special level, level I-IV) of the same type;
 - **Grade II ECC:** For construction execution of construction works of level II or lower (i.e. level II-IV) of the same type; and
 - **Grade III ECC:** For construction execution of construction works of level III or lower (i.e. level III and IV) of the same type.

Conditions for the issuance of ECC

- > To obtain the ECC, one of the most critical conditions is the construction experience applicable to the organization and its personnel.
- > **Details of the conditions for the Grade I ECC are as follows:**
 - The site manager must satisfy specific conditions for being the site manager of grade I;
 - The individual in charge of construction execution must have a diploma and has work experience of at least 3-5 years in case of diploma for his/her tasks;
 - Technical workers must have a certificate on completion of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relevant to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for the grade I Eligibility Construction Certificate;

- The organization shall provide sufficient machinery and equipment meeting construction execution requirements that match its tasks; and
- The organization directly executed (i) at least one level I works or (ii) two level II works of the same type.

> Details of the conditions for the Grade II ECC are as follows:

- The site manager must satisfy specific conditions for being the site manager of grade II or higher;
- The individual in charge of construction execution must have a bachelor's degree or diploma and has work experience of at least 1 year in case of a bachelor's degree; and 3 years in case of diploma for his/her tasks;
- Technical workers must have a certificate on completion of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relevant to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for the grade II ECC;
- The organization shall provide sufficient machinery and equipment meeting construction execution requirements that match its tasks; and
- The organization directly executed (i) at least one level II works or (ii) two level III works of the same type

> Details of the conditions for the Grade III ECC are as follows:

- The site manager must satisfy specific conditions for being the site manager of grade III or higher;
- The individual in charge of construction execution must have a bachelor's degree or diploma relevant to his/her tasks;
- Technical workers must have a certificate on completion of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relevant to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for the grade III ECC;
- The organization shall provide sufficient machinery and equipment meeting construction execution requirements that match its tasks.

⇒ No construction experience is required to obtain the Grade III ECC. Please note that, if the organization cannot satisfy above conditions, the organization may only proceed construction works of level IV, because the ECC is not required to execute the construction works of level IV.

Application Dossier

According to Article 58.b Decree 59/2015/ND-CP, amended by Decree No. 100/2018, the application dossier for obtaining ECC is as below:

- > An application form
- > An establishment decision (if any);
- > A practicing certificate or declaration of the practicing certificate code in case the practicing certificate is issued as prescribed by the Law on Construction 2014, applicable to the titles that require the practicing certificate; qualifications of individuals in charge;
- > Qualification or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of technical workers (regarding the applicant for the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construction); and
- > Contract and record on commissioning of completed typical tasks.

Timeline

According to Article 56b.1.b Decree 59/2015/ND-CP, amended by Decree No. 100/2018, the time limit is within **20 days** from submission of required dossier. In the case the application is unsatisfactory, the issuing authority shall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once within **0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is received.

Issued Authority

According to Article 44b Decree 59/2015/ND-CP, amended by Decree No. 100/2018, the issued authority is **Departments of Construction of provincial where the construction project located.**

Fee

According to Article 4 Circular No. 172/2016/TT-BTC, the fee for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construction is **VND 1,000,000.**

Contact us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호치민)
+84-28-3827-4214
ymgil@shinkim.com



박영수
파트너변호사 (하노이)
+84-24-3245-4013
ysupark@shinkim.com



김대선
외국변호사 (호치민)
+84-28-3827-4114
dsunkim@shinkim.com



정종대
소속변호사 (호치민)
+84-28-3827-4514
jdjung@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하노이)
+84-24-3245-4043
yjiseo@shinkim.com



Tran Thi Bich Hanh
외국변호사 (하노이)
+84-24-3245-4042
tbhtran@shinkim.com



Phan Thi Hang
외국변호사 (호치민)
+84-28-3827-4098
thphan@shinkim.com



Nguyen Thi Minh Ngoc
외국변호사 (호치민)
+84-28-3827-4099
tmnnguyen@shinkim.com



Pham Quynh Trang
외국변호사 (하노이)
+84-24-3245-4042
qtpha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